

기업 구조조정과 경쟁정책 방향

- 공정위, 국회 「민생안정대책위」보고 -

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6일(월)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·자민련 공동 “민생안정대책위원회”에서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향후 경쟁정책 추진 방향을 보고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I. 기본방향

- 정부와 대기업이 합의한 5대 개혁과제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감시를 강화
 - 아울러 대기업이 개혁과제를 조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의 개선도 병행추진
 - 정부와 대기업이 합의한 5대 개혁과제
 - ①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, ② 상호채무보증의 해소, ③ 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, ④ 핵심부문의 설정과 중소기업과의 협력 강화, ⑤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강화
- 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관련시책은 법과 제도의 틀 속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
 - 이를 통해 기업의 구조조정이 예측가능한 가운데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
- 기업의 구조조정은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하여 기업 스스로 추진하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
 - 다만, 이 과정에서 독과점이 심화되지 않도록 공정한 시장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당국의 역할은 강화
 - IMF와 IBRD도 우리 나라에 시장경제체제가 확립되어야만 현재의 위기극복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음

◆ 기업의 구조조정의 예측가능한 가운데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틀 속에서 관련시책을 일관성있게 추진

가. 채무보증을 기 확정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해소

- 신규 채무보증은 1998. 4. 1부터 전면 금지하고, 기존 채무보증 33.5조원은 2000. 3. 31까지 완전해소('98. 2. 14 공정거래법 개정)
 - 자기자본의 100%를 초과한 보증액 6.4조원은 금년 3월말까지 해소
- 채무보증의 조기 해소를 위해 기업의 자구노력과 금융기관의 대출관행 개선을 병행추진
 - 기업에 대해서는 합병·자산매각 등을 통해 채무보증을 해소토록 하고, 위반회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
 -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여신금액을 초과하는 중복·과다 보증액을 해지토록 유도
 -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장이 주재한 금융기관장회의에서 금융기관은 중복·과다 보증을 자진 해소하기로 합의('98. 3. 19)
 - 물적담보가 충분하게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되어있는 채무보증이나 2개 이상 계열사의 중복보증은 해지

II. 주요 추진과제

1. 대기업 구조조정의 촉진

- 금융기관이 중복·과다 보증을 해지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해지 추진

나. M&A활성화를 위해 기업결합심사제도의 합리적 운영

- 외국인의 적대적 M&A 허용과 기업의 구조조정 노력으로 향후 M&A가 크게 증가할 전망
- M&A를 통한 구조조정으로 우리 경제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쟁제한의 폐해보다 국민경제적 효율성이 큰 경우 기업결합을 허용
 - (예) • 다른 방법으로는 회생이 불가능한 부실기업을 인수하는 경우
 - 적정경영규모의 확보로 경쟁력이 강화되거나, 수출증대에 현저히 기여할 수 있는 기업결합 등
- 다만, 독과점 폐해를 유발하는 M&A는 엄격히 규제

다.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감시 강화

- 대기업집단의 계열사간 부당지원행위는 선단식경영의 주요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한계기업의 퇴출을 저해
 - 기업집단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, 공정한 경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계열사간 부당지원행위는 완전 차단
 - (예) 전자제품 생산회사가 계열사로부터 부품을 구입하면서 시가보다 48% 높게 대금을 지급
- '98. 4월부터 내부거래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
 - 30대 기업집단 계열사간 내부거래에 관한 자료요구('98. 3. 17)
 -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기업집단 또는 업종을 선정하여 순차적으로 조사 실시

라. 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 <지금까지의 추진실적 >

- 기업이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

도록 공정거래법, 증권거래법 등 10개 관련법률을 개정('98. 2. 24)

-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출자총액 제한을 폐지하되 무리한 차입경영을 가능하게 하고 부실계열사 정리를 어렵게 하는 상호지급보증관행은 조기에 해소(공정거래법)
-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결합재무제표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고, 외부감사제도와 회계공시제도를 강화(외감법)
- 부실경영에 대한 외부견제기능 강화를 위하여 외국인의 적대적 M&A 허용, 의무공개매수제 폐지 등 M&A관련규제 완화(외국인투자법, 증권거래법)
- 한계기업의 원활한 퇴출을 위하여 화의, 회사정리, 파산 등 기업퇴출 관련절차와 담당기구를 효율화(퇴출관련 3법)
- 채무보증등 주요 재무정보의 공시강화와 상장법인에 대한 사외이사 선임 의무화를 위하여 증권위규정 개정('98. 2월)

<앞으로 추진할 과제 >

- 소수주주권 강화, 지배주주의 법적책임 제고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내부감시기능 제고를 위하여 상법개정 추진
- 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회사분할제도 도입, 합병절차 간소화 등도 포함(상반기중 개정예정)
- 적대적 M&A의 조기 허용과 결합재무제표제도의 실효성있는 시행을 위하여 관련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

2.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자적 발전 도모

- ◆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수직적 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전환하여 동반자적 발전 도모
- ◆ 중소기업의 보호·육성을 위한 단체수익계약 제도를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

-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수평적 관계 정립을 위해 공정거래법 운영을 강화
 - 대기업이 부당하게 중소기업에 대해 전속적 거래관계를 강요하거나 자사 제품 구매를 강제하는 행위 등을 강력히 제재
 -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들이 중소기업의 판매대금을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는 행위를 조사하여 시정
- 중소기업의 자금난완화를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방법의 개선
 - 원사업자 부도 등의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 의무적으로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제도 개선
 -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만큼 하도급업체에도 같은 비율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 추진
 -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대하여는 공사대금을 어음대신 현금으로 전액 지급토록 유도
- 중소기업 체질강화를 위해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
 - 단체수의계약제도는 업체간 나눠먹기식 물량할당, 신규업체의 조합가입 저지 등으로 중소기업간 경쟁을 제한
 - 중소기업청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('98. 3. 30, 조사착수)하여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로 전환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

3. 독과점 시장구조와 경쟁제한제도의 개선

- ◆ 장기간 독과점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는 시장구조 개선
- ◆ 개별법상 인정되고 있는 카르텔(공동행위)제도의 정비

가. 독과점 시장구조의 개선

- '98년도 시장지배적품목 128개 중 최근 5년 이상 계속 지정된 품목이 79개로 독과점 시장구조가 고착화
 - 이는 기득권자 보호를 위한 인·허가 등으로 진입장벽이 구축되고, 국내산업 보호목적으로 수입개방과 외국인투자가 제한되었기 때문
- 독과점 시장구조가 장기간 고착화된 품목을 중심으로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수립·추진
 - 자동차, 타이어산업분야의 전속거래 관행을 기시정
 - 앞으로 철강류등 24개 독과점품목에 대해 진입규제, 가격규제, 수입제한 등 경쟁제한적 제도와 관행을 개선

나. 개별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카르텔의 일괄 정비 추진

- 특정산업의 보호·육성목적 등으로 가격의 공동결정, 판매물량 조정 등 카르텔행위가 개별법에 의거 허용(59개 법령, 72개 카르텔)
 - (예) 보험사업자들이 설립한 보험개발원이 보험료를 공동으로 산출(보험업법)
- 카르텔은 경쟁을 제한하여 국내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저해하고 카르텔을 금지하려는 국제적 경쟁정책 방향에도 배치
 - * OECD는 '98. 4월 경성카르텔의 금지권고(안)을 채택 예정
- 시장구조를 경쟁촉진형으로 전환하고 관련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카르텔일괄정리법 제정을 추진